

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

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개선에 따른 포상금액, 지급기준·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,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 확보

□ 지급 근거

-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(신고포상금), 시행령 제91조의2, 규칙 82조의2
 ※ 선박·해양시설 등에서 기름·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
-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(2017. 7. 26. 개정, 훈령 제1호)

□ 포상금 지급대상

-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또는
-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

□ 포상금 지급액 : 5만원~300만원

□ 지급방법

- 해양오염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해경서 등에 제출
-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급
 ※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
- 하나의 사건으로 2명 이상 신고 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

□ 지급현황

연도	신고 접수	범인 검거	포 상 금 지 급								
			구 분		200만원 ~ 300만원	100만원 ~ 200만원	50만원 ~ 100만원	30만원 ~ 50만원	10만원 ~ 30만원	5만원 ~ 10만원	5만원
			총 계	건수	금액(천원)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	건/금액
'14	1,201	211	58	7,122	1/2,500			2/620	10/1,342	23/1,560	22/1,100
'15	1,033	222	50	5,415		1/1,140		1/500	6/1,215	20/1,460	22/1,100
'16	1,135	257	57	4,700				1/350	8/1,330	21/1,670	27/1,350
'17	1,216	261	50	4,440				1/400	7/1,440	19/1,450	23/1,150
'18	1,439	294	68	6,388				2/750	11/2,230	26/1,958	29/1,450